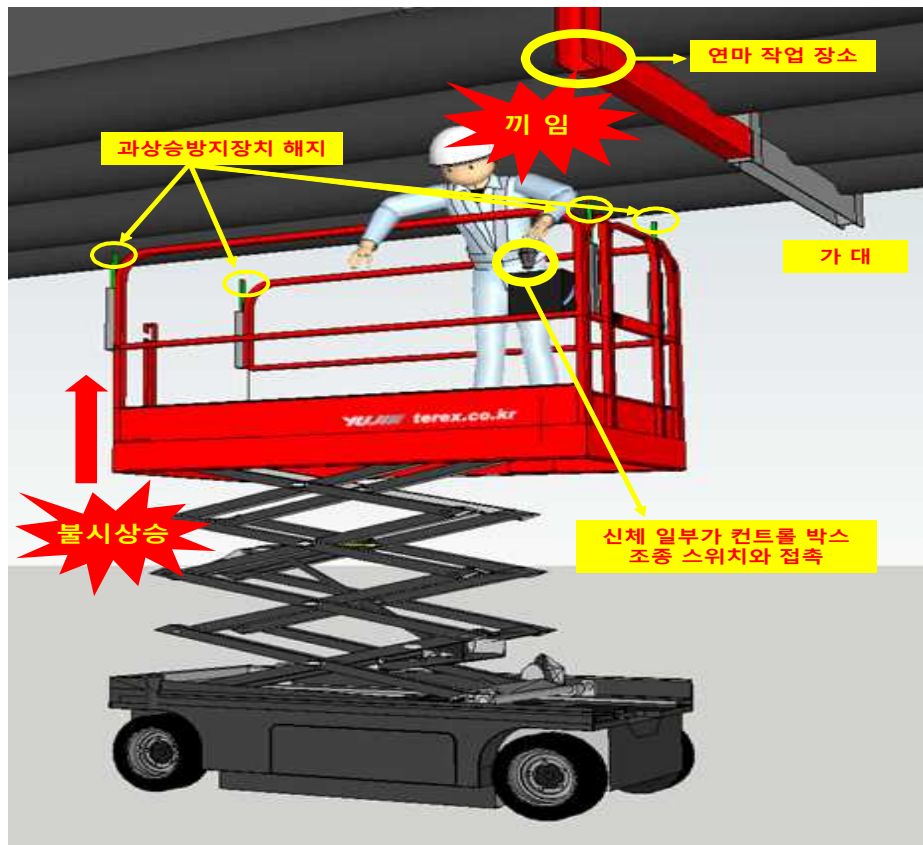


고소작업대 작업대에서 이동 중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협착되어 사망

재해형태	협착	재해정도	사망 1명
재해개요	○ 소속의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작업대에 탑승 이동 중 ○ 고소작업대의 조정레버에 신체가 접촉되면서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되어 ○ 재해자의 상체 가슴부위가 작업대의 상부 난간대와 난방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.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	○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(안전보건규칙 제186조) - 작업대가 상승시 천정 구조물 등에 근로자의 협착(끼임)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과상승 방지장치(리미트 스위치)를 작동이 유효하도록 적정 높이까지 올려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하 함.
------	--